

[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(2)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계약기간 및 계약의목적)

①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요구확인서,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주민 등록증 사본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.

②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,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
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와도 가능하며 계약서는 2 부 작성하여 1 부는 센터가 보관하고 1 부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보관한다. 이용 절차는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, 우리 센터의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한다. 이용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·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,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 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.

④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시간, 이용료 납부, 비급여 대상,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 부담금 등으로 한다.

제 6 조 (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
1.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 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(단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관에서는 이용자(보호자)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.) 세부 내용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른 기준에 의하며, (장기요양급여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.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 조)

①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(월 한도액)

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(공통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	2,512,900원	2,331,200원	1,528,200원	1,409,700원	1,208,900원	676,320원

❶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 이용, 초과 시 100% 자부담

❷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 시 1~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%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하고 3~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% 한도 내에서 추가 산정

❸ 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시 월 한도액 50% 범위 내 추가 가능 추가 산정

②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

③ 주야간보호

(단위 : 원)

등급		'25년		'26년	
		수가	본인부담	수가	본인부담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1	40,650	6,098	41,820	6,273
	2	37,630	5,645	38,720	5,808
	3	34,740	5,211	35,740	5,361
	4	33,160	4,974	34,120	5,118
	5	31,580	4,737	32,490	4,874
	인지지원	31,580	4,737	32,490	4,874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1	54,490	8,174	56,060	8,409
	2	50,470	7,571	51,930	7,790
	3	46,590	6,989	47,940	7,191
	4	45,000	6,750	46,300	6,945
	5	43,400	6,510	44,650	6,698
	인지지원	43,400	6,510	44,650	6,698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1	67,770	10,166	69,730	10,460
	2	62,780	9,417	64,590	9,689
	3	57,960	8,694	59,640	8,946
	4	56,380	8,457	58,010	8,702
	5	54,780	8,217	56,360	8,454
	인지지원	54,780	8,217	56,360	8,454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1	74,660	11,199	76,820	11,523
	2	69,160	10,374	71,160	10,674
	3	63,900	9,585	65,750	9,863
	4	62,290	9,344	64,090	9,614
	5	60,710	9,107	62,460	9,369
	인지지원	54,780	8,217	56,360	8,454
13시간 초과	1	80,060	12,009	82,370	12,356
	2	74,170	11,126	76,310	11,447
	3	68,520	10,278	70,500	10,575
	4	66,930	10,040	68,860	10,329
	5	65,350	9,803	67,240	10,086
	인지지원	54,780	8,217	56,360	8,454

③ 본인부담금 비율
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수급자	0% 부담
	차상위계층(60% 감경대상자)	6.0% 부담
	차상위계층(40% 감경대상자)	9.0% 부담
	일반수급자	15% 부담

2.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3.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[비급여 내역]

- ① 식사재료비 : 4,000 원(2 식 기준)
- ② 간식비 : 2,000 원(오전&오후) ③ 기타 초과분 병원비 약값 등

제 7 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(1)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질적· 양적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에 프로그램 및 운영상의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참여할 수 있다.

②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운영 규정 또는 계약서상의 내용과 서비스가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- ② 이용자의 월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
- ③ 신원인수인계인(보호자 등)은 계약 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으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, 송 영 시 어르신을 센터의 종사자에게 인계 및 인수하여야 하며, 자택 도착 시 신원인수자가 부재 시에는 도착 이후 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8 조 (계약의 해제)

- 이용자(보호자)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(사망) 서비스가 종결되며, 이용료(본인 부담금)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어르신의 건강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,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, 시설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어르신의 생활에 지 장을 줄 때, 민.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